

[사 건 명] 행심 2019 - 4

학교폭력에 따른 『교내봉사 2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에 따른 『교내봉사 2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1.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2018. 11. 19.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교내봉사 2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청구인은 2018. 11. 2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9.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1. 청구인은 2018. 10. 24. 경 핸드폰과 관련하여 ○○○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비용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실제 사안의 정도와 선도의 가능성, 화해정도를 보면 청구인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처분을 함으로 충분히 청구인의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서로 3대씩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도 서로 3대씩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였고, 점수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만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8. 10. 22. 등교중에 ○○○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 빌려주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2018. 10. 24. 경 학교에서 부스 체험시간에 ○○○을 만나 밖으로 나가 서로 주먹으로 3대씩 주고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뼈가 뿌러지고 귀가 찢어져 입 원하여 수술하였고, ○○○은 손에 타박상을 입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2) 청구인은 2018. 10. 24. 경 핸드폰과 관련하여 ○○○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비용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 빌려주지 않아 골목에서 싸웠고, ○○○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법상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피청구인은 실제 사안의 정도와 선도의 가능성, 화해정도를 보면 청구인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처분을 함으로 충분히 청구인의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으로 더 큰 폭행을 당하여 수술을 한 점과 청구인과 ○○○이 화해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청구인에게 먼저 원인이 있고, ○○○에게 먼저 싸움을 하자고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